

경산4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5차) 분양공고

- ◆ 분양 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 현장 답사 및 각종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향후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해제 요구 등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의 대상토지는 “계약조건 선택형” 적용 토지로, 신청자가 계약체결 시 ㉠ 토지 리턴제, ㉡ 거치식 할부 중에서 계약조건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공고의 [7. 대금납부조건(방법)]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토지리턴제 : 토지리턴제, 중도금 4회 분할(12개월) 및 잔금(50%) 납부(5년 무이자)
 - ㉡ 거치식 할부 : 18개월 거치 후 중도금 2회 분할(14개월) 및 잔금(50%) 납부(5년 무이자)

1

분양대상 토지

구분	필지번호	지번	면적(m ²)	공급금액(원)	공급 방법	입찰(신청) 보증금
1	공동1	광석리 767	53,652.3	45,094,758,150	추첨	공급금액의 5% 이상
2	공동2	광석리 765	80,094.4	67,880,004,000		
합 계		2필지	133,746.7	112,974,762,150		

※ 분양대상 토지 세부내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경산4 일반산업단지 분양홈페이지(www.kicoxgs4.co.kr)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에 게시되는 **분양공고문 및 관련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에 의거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설치 후 입주인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등록업자로 등록된 자

※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한함

※ 2인(법인) 이상이 공동신청할 경우 각 신청자(법인)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허용용도 등 지구단위계획

구 분	내 용
허용 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9층(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
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	○ 2,592호(공동1 : 1,040호, 공동2 : 1,552호)

※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지구단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분양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분양공고	'26. 9. 11.(금) ~ 10. 18.(일) (3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분양 홈페이지	www.kicoxgs4.co.kr
분양(입찰)신청	'26. 10. 19.(월) (09:00) ~ 10. 21.(수) (16:00)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개 찰	'26. 10. 22.(목) (11:00)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팀	분양담당자 PC
낙찰자발표	'26. 10. 22.(목) (15:00)	경산4일반산업단지 분양 홈페이지	www.kicoxgs4.co.kr
분양계약 체결	'26. 10. 26.(월) (10:00) ~ 10. 27.(화) (16:00)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팀	방문계약

※ 분양계약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팀

※ 상기 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분양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분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공급일정 내 분양(입찰)신청,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방법

- 본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전자입찰(추첨)으로 진행되므로 입찰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온비드 이용방법 문의 : 1588-5321(고객지원센터)

○ 진행절차

온비드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등록 → 입찰대상 물건확인 → 인터넷 입찰서 작성
→ 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확인 → 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 입찰신청

- 입찰신청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추첨)방식으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 전자거래범용 또는 온비드 전용 공동인증서

□ 입찰서 제출

-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신청(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신청(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 신청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1필지에 2인(법인포함)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각 신청인(법인) 모두 해당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전자서명방식으로 공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신청서에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유효합니다.

※ 신청(입찰)서 제출 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할 수 없으며, 신청과 계약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공동신청(개인, 법인)은 해당 필지를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중복 신청) 모두 무효처리하고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인(법인)여부는 성명(법인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표자(공동대표자일 경우도 포함)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일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신청자 중 1인의 동일필지 개별입찰(신청)은 온비드 시스템상 불가

※ 2인(법인포함)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공동 명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 분할은 불가합니다.

☐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은 온비드에서 신청자별로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로는 "위탁계정"입니다.

○ 낙찰되지 않은 신청자의 입찰보증금은 추첨(개찰) 이후 온비드에서 신청(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반환계좌(신청 이후 반환계좌 변경 불가)로 이자 없이 일괄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 체결 시 부족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후에는 입찰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차순위 매수 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 분양신청(입찰) 무효

○ 본 공고문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분양(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신청은 무효입니다.

□ 낙찰자 선정

- 분양신청(입찰)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공고된 추첨일시에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단독 신청일 경우 해당 신청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부당한 방법(담합)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6

분양 계약관련 구비서류

□ 분양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구 분	법 인
공 통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 ③ 분양신청서, 종람확인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④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 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⑥ 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입영수증 - 납부계좌 : 기업은행 962-001117-04-340 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필지별 공급(낙찰)가격의 10%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당사자 명의로 입금

※ 분양계약체결 기간('26. 10. 26. ~ 27.)내에 계약을 체결(추가계약금 미납 등)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분양공고일('26. 9. 11.)이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하고,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 ①토지리턴제, ②거치식 할부 중 계약자 선택

○ 계약체결시 계약금 10%, 5년 무이자 분할 및 잔금 50% 납부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① 토지리턴제	10%	10%*4회(12개월 마다)		50%
② 거치식 할부		거치기간(18개월)	20%*2회(14개월 마다)	

○ 대금납부계좌 : 기업은행 962-001117-04-340(예금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 대금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 대금납부일정에 따라 기재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토지리턴제>

- 정의 : 토지매수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뒤 환불을 요구(리턴권 행사)하면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에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하는 거래방식
- 적용기간 :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 * 금번 공고의 경우 수납기간 60개월(5년)으로, 계약일로부터 30개월 경과한 날부터 잔금약정일까지
- 적용방법 : 적용기간 내 매수인 신청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의 원금 반환
 - * 납부한 계약보증금 원금(이자無) 반환되며, 중도금은 납부한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계약해제일이 속한 달)을 가산하여 반환
 -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해제, 계약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금액 지급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계약해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
- 권리소멸 : 잔금 납부약정일 경과시,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시
- 권리승계 : 적용기간 내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리턴권 승계 가능
- 기타사항 : 토지리턴권 행사 가능기간 이전 및 소멸 이후에의 계약해제는 일반 계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함

□ 지연손해금 : 잔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현행 연 7.17%) 부과

※ 지연손해금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8

토지 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토지 사용

- 토지 상태는 조성이 완료된 토지로 분양공고일 현재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소유권 이전

-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약 3~4일 소요되므로 대금완납 전 우리공단에 문의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가능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명의변경

-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가 제한됩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우리공단의 동의(전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확인을 거침)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 전매 관련 정부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제·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법상 문제는 전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사항입니다.

- 명의변경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순차등기 및 취득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변경시 연체금 및 지연손해금 등이 사전에 완납되어야 합니다.

10

주요 세금 안내

- 공급용지의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셔야 합니다. 단, 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할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감면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 납부약정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잔금 선납)한 경우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부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미이전 등의 사유로 과세기관이 매수인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고 공단에 부과하는 경우 공단이 먼저 대납하고 이를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하며, 소유권 이전은 공단이 대납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후에 가능합니다.
- 용지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공단은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15만원	35만원

※ 주요 세금 등 신고사항 안내는 매수인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관련사항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이 관계법령 및 과세기관 등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 신청인은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 분양공고문, 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분양(입주)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 학교용지는 경상북도교육청·경산교육지원청의 설립계획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설립시기도 경상북도교육청·경산교육지원청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학교 설립계획의 변경, 설립 지연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에게 없으며, 이 경우 별도의 학생 수용 대책과 통학을 위한 보행환경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 토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은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변경 승인내용 포함),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관련조례 등), 지구단위계획 등을 분양(입주)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규제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공고일 이후 관련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이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열람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지구단위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홈페이지 첨부자료 참조)

- 분양대상 토지는 토석의 절취 및 성토, 암반부지로 조성됨으로 신청인은 분양(입주) 신청 전에 분양대상 토지의 조성상태(토석의 형상 및 크기), 현황(형상, 고저, 부지내 경사도, 연약지반 분포현황, 암반·법면·옹벽구조물의 유무, 건축한계선, 송전선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내 대표 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지상노출 시설물(소화전,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등), 산업단지내·외의 입지여건(변전소, 배수지 등), 차량 진·출입로간 등 제반 현황을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계획도면에 대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팀에서 열람·확인가능하고 분양계약 전 신청인은 충분히 위 제반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 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건축에 따른 옹벽 설치(단, 옹벽시공시 각종 공공(기반)시설물의 파손·훼손 금지) 및 암반처리 등 추가 공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분양받은 토지사용시 유의할 사항】

- ① 건축주는 건축설계시 분양받은 토지의 연약지반 분포 범위, 심도, 지반처리내용, 잔류침하량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함
- ②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함
- ③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 상·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는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설계하여야 함

- 우수, 오수, 상수, 공업용수, 전기, 통신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반드시 우리공단이 시행하는 조성공사 관련계획도면 및 현장 확인 후 매설 위치·심도를 건축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공급대상토지 중 조성공사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면(옹벽구조물 포함)이 위치한 부지는 분양면적에 포함되며, 해당부지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 후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부지내 오수받이 뚜껑에는 오수받이 관리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 도로, 경계석, 보도블럭, 가로수, 가로등, 상하수도, 전기공급시설, 교통신호기, 소화전 등 도로부속시설물은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건축시 간섭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진출입로 위치 등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득이 건축물 배치 및 진출입로 설치 등으로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시공된 모든 시설물의 이동 및 추가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과 인허가 행위는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매수인은 경계 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사용 중 우리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공단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단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통신, 전력, 상하수도, 유선방송, 인터넷 등의 개별사업시행자 시설물은 조성공사완료 시기와 사용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해당 공급기관에 공급여부, 인입방법 및 시기 등을 확인·협의하여 직접 공급 신청을 하며, 별도의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은 불허, 특히 산업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방류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및 다량의 공해·악취물질 배출 업종과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이용에 애로가 있는 업종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토지대금의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대출협약이 체결되어 대출제도가 시행 중이며, 대출가능 여부 및 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협약 은행 목록 및 기업지원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4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내 자료실(www.kicoxgs4.co.kr)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조례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건축공사로 인해 산업단지 공공시설(녹지, 도로 등)에 대한 토지점용이 필요할 경우 우리공단 및 공공시설물 관리부서(경산시 등)와 점용협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 등) 및 임시시설(웬스, 우오수 배제 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지반은 현재의 상태로 공급하며 계약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우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팀(070-8895-719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www.kicoxgs4.co.kr

2026. 9. 11.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첨부서류]

1. 지구단위계획 도면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2. 분양 대상토지 내역
3. 분양계약 서식
4. 계약서 양식